##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29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 박용갑·박상혁·소병훈

이해식 · 장종태 · 이병진

복기왕 • 박정현 • 권칠승

황정아 · 조승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전문가들은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음.

현행법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 15개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금지시설이 115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조류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지시설을 설치, 조성한 자에 대한 이주 보상 및 제재 처분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항 주변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금지시설에 대한 이전명령과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및 제69조제1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6조의4(금지시설 이전명령 및 토지수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56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금지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1항에 따라 금지시설의 이전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금지시설 등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1.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2. 이전비용이 그 물건이나 시설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 하는 자 등은 제56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

-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 외에 금지시설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은 금지시설 등의 소유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는 토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제56조의4(금지시설 이전명령 및 |
|                    | 토지수용 등) ① 국가와 지방   |
|                    | 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   |
|                    | 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    |
|                    | 등은 제56조제5항을 위반한 자  |
|                    | 에게 금지시설의 이전 등 필요   |
|                    | 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   |
|                    | 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    |
|                    | 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1항에   |
|                    | 따라 금지시설의 이전명령을     |
|                    |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
|                    | 물건 등에 대하여 금지시설 등   |
|                    | 의 소유자 등과 미리 협의하여   |
|                    | 그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   |
|                    | 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                    | 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   |
|                    | <u>상하여야 한다.</u>    |
|                    | 1.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  |
|                    | 로 인하여 당초 목적으로 사    |
|                    | 용할 수 없는 경우         |

2. 이전비용이 그 물건이나 시설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 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 리·운영하는 자 등은 제56조 제5항에 따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 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 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 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 에 정착된 물건이나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 외에 금지시설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 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 리·운영하는 자 등은 금지시 설 등의 소유자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 제69조(과태료) ① (생 략) 1. ~ 7. (생 략) <신 설> 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에 있는 토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시설을 설치한 자